



제40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위법 처리 처벌수준 강화〉

■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264호)

2022.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대 영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 개인정보 위법 처리 처벌수준 강화	2
※ 참고자료	7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2. 4. 14.
3. 회부일 : 2022. 4.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홍신소를 통한 스토킹범죄 살인 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존재하였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II. 검토의견 : 개인정보 위법 처리 처벌수준 강화

-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0조(벌칙) (생략)	제70조의2(벌칙) (현행 제70조와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6. (생략)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같은

제71조(벌칙) -----

-----.

1. ~ 4의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
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 -----.
---	--

□ 현행 제71조는 개인정보 처리 등에 있어 제59조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 및 개인정보 훼손·멸실·유출 등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러나 최근 발생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홍신소를 통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가 존재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무단 유출행위 등에 대한 처벌의 하한(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과 상한(3억원 이하 벌금)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 최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유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개인정보의 공유·활용에 있어 보호조치에 대한 공공

1)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기관 및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²⁾

□ 다만, 현재 제71조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처벌 수준을 강화할 경우, 「형법」 상 다른 범죄의 내용과 형량을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처벌 수위인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

문 의 처
02)6788-5107

2) 참고로, 개정안은 양벌규정 개정을 통해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등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참고자료: 「형법」 상 3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범죄(p7)

참고자료

「형법」 상 3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범죄

죄 명	내 용	형 량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0조)	내란 또는 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상해치사 (제259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년 이상 유기징역
유기등 치사상 (제275조)	유기·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존속학대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3년 이상 유기징역
강도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 강취 등	3년 이상 유기징역
인질강도 (제336조)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등	3년 이상 유기징역

※ 참고로, ‘공무상비밀 누설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음(「형법」 제127조).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